

	실험실습실 운영 관리 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3. 3. 1.
		최종개정일자	
		담당부서	기획산학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실험·실습실에 설치한 기자재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동일 또는 유사내용의 교과목에 대한 원활한 실험·실습의 수행으로 교육·연구의 내실을 기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모든 실험·실습실과 실습기자재 중 2개 학과 이상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운영방침) 대학 내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험·실습 기자재의 집중 확보로 기자재의 활용성 및 교육 효과 제고
2. 최신 정밀 고가 기자재는 공동 사용으로 활용의 극대화
3. 학과별 실습 기자재 중 공동 사용품목 최대 활용

제2장 위원회

제4조(구성)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의 원활한 공동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취업처장이 당연직이 되고, 위원은 각 부처의 보직교수 및 각 계열별 교수 중 2인을 위원장이 추천하여 구성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을 위한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2.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의 운영·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3. 실험·실습 재료비 배정에 관한 사항
4.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시간 배정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공동실습실의 추가 지정 또는 해지의 협의 요청은 매학기 개시 3개월 전까지로 하고,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소관부서 및 업무분장) 각 실험·실습실의 소관부서 및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 ①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실험·실습실의 운영 소관 부서는 공동전산실의 네트워크 관리는 정보관리소에서 하며, 공동어학 실습실은 교무입학처에, 학과별 실습실은 각 학과에 둔다.
- ②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공동실험·실습 기자재는 해당 학과에서 관리한다.
- ③ 각 실험·실습실의 운영실장은 해당 학과의 학과장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운영실장은 전문요원을 따로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실험 · 실습실의 운영계획 수립
2. 실험 · 실습재료 및 기자재의 확보와 운용 관리
3. 해당 전문요원의 업무관리

제8조(공동실습실 지정 및 공동기자재 이관에 따른 업무) 제5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실습실 및 기자재로 지정된 경우 해당 학과에서는 공동 활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시간배정) ① 실험 · 실습시간의 중복방지와 원활한 실험 · 실습을 위해 실험 · 실습시간 배정 시 공동실습실 및 공동기자재의 시간을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실습실 및 공동기자재 사용을 원하는 학과에서는 매 학기말 수강신청 종료 직후에 다음 학기의 실험 · 실습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산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실습실 및 공동기자재의 운영관리) ① 공동실습실 및 공동기자재의 실습은 실습담당 교수가 직접 수행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소관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실습담당 교수와 지정된 소관 부서에서는 업무집행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 과정에 의한 공동 실습 지원 업무
2. 보유 기자재에 대한 도난 및 훼손 등과 유지 보수에 관한 업무
3. 공동 기자재를 사용한 학과에서는 실습 종료 후 기자재를 소관 부서에 인계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이상 유무를 확인
4. 기타 공동 실습에 필요한 업무

제11조(실습일지 작성) 실습담당 지도교수는 실습 종료 후 사용기자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실습일지<별지서식>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실험 · 실습일지

담당교수	학과장	산학협력 처장	결 재

실 험 실 습 일 지	A반 : 20 . . . (요일) ~ 교시										
	B반 : 20 . . . (요일) ~ 교시										
	C반 : 20 . . . (요일) ~ 교시										
	D반 : 20 . . . (요일) ~ 교시										
	E반 : 20 . . . (요일) ~ 교시										
단 원 명											
실 험 실 습 내 용											
사 용 기자재											
실 험 실 습 재 료 현 황											
품 명	단 위	수 량		품 명	단 위	수 량					
비 고											